

## 「2021수소모빌리티+쇼」 참가업체 모집 공고

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2021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KINTEX에서 개최되는 「2021수소모빌리티+쇼」 참가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수소모빌리티+쇼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수소전문 모빌리티쇼로서 수소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전시회이자 업체간 교류의 장입니다.

수소 및 전기차, 에너지 등 관련 업체들의 브랜드 제고, 마케팅 강화, 관련 기업간의 협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「2021수소 모빌리티+쇼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1. 행사 개요

#### ☐ 행사명

- 2021수소모빌리티+쇼(H<sub>2</sub> MOBILITY+ENERGY SHOW 2021)

#### ☐ 개최목적

-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수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의 장 마련
- 수소경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,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전개

☐ 기 간 : 2021년 9. 8(수)~10(금), 10:00~17:00

☐ 장 소 : 킨텍스(KINTEX)

☐ 전시규모 : 약 13,238m<sup>2</sup>

☐ 행사구성 : 전시회, 국제포럼, 부대행사

☐ 주 최 : 수소모빌리티쇼+조직위원회

\*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수소융합얼라이언스, 수소에너지네트워크(주), 한국수소산업협회 4개 기관으로 구성

☐ 주 관 : 수소모빌리티쇼+조직위원회, KOTRA

☐ 후 원 :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중소벤처기업부

## □ 전시품목

- 수소모빌리티 분야
- 수소충전인프라 분야
- 수소에너지 분야

## □ 부대행사

- B2B 상담회
  - 국내외 수소관련 업체 간의 1:1 비즈니스 상담기회 마련
  - 관계자간 네트워킹을 위한 부대 이벤트 개최
- 수소모빌리티 시승행사
  - 바이어, 업계 관계자, 일반인 대상 시승체험 개최
    - 수소승용차, 수소버스, 수소트럭 등
    - 수소건설기계, 드론 등 시연
- H<sub>2</sub> Innovation Award
  - 품목별 신제품/신기술 출품 기업에 홍보기회 제공 및 우수기업 대상 시상
  - 일자별로 브리핑 진행, 해외언론사 초청을 통한 글로벌 홍보 지원
-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
  - 수소경제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 동향 분석 및 미래 전망,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
  - 전문 기술 세미나 및 각 연구기관 학술대회 개최

## 2. 참가 신청

### □ 참가대상 : 다음과 같이 수소 및 전기차 관련 제품, 기술, 서비스를 전시하고자 하는 업체, 단체, 기관

- 수소모빌리티 분야
  - 수소차(승용, 버스, 트럭, 특장 등)
  - 기타 수소모빌리티(열차, 선박, 잠수함, 항공기, 드론, 이륜차, 자전거, 지게차 등)
  - 연료전지(발전용, 가정용 등), 수소공급장치, 공기공급장치, 열관리장치, 수소저장장치, 전장장치 등

- 수소 저장, 운송 등 인프라 및 수소경제 관련 분야
    - 수소충전소, 발전소, 수소제조, 수전해, 수소도시, 지자체 등
  - 에너지 분야
    - 신재생에너지, 태양광, 풍력, 2차 전지 등
  - 기타
    -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부품 및 용품, 기술 및 서비스 등
    - 기타 수소 관련 IT 및 S/W, 디자인 업체
- \* 전시장 업체 유치에 따라 전시 품목을 변경할 수 있음.

□ 참가신청 : 2020. 10. 20 - 2021. 5. 31

## □ 부스신청 및 참가비

- 독립식 부스 : 참가업체가 배정된 전시면적에 자체적으로 전시 구조물을 설치·공사하는 부스
  - 30부스 이상 신청한 참가업체는 주최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복층 구조물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
  - 다수의 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별도의 협회나 기관(단체)은 주최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독립부스 내에 소수 참가기업들의 전시공간을 자체 구성할 수 있음.
- 조립식 부스 : 주최자가 전시공간으로 설치·공사하여 제공하는 부스(1부스=3m×3m)
  - 기본 제공내역
    - 3면 칸막이(부스 위치에 따라 1-2면만 칸막이 설치)
    - 국·영문 상호 간판 및 부스번호판
    - 전기(단상 220V 1kW) 배선, 콘센트 및 조명등
    - 부스 내부 바닥 파이텍스, 안내 데스크 및 의자 각 1개
    - 원형상담테이블 1개 및 의자 4개
- 참가비

(부가세 별도)

| 구 분 | 독립식 부스        | 조립식 부스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전시관 | 2,500,000원/부스 | 3,000,000원/부스 |

- 참가비에는 전시장 임차료, 전시장 관리에 따른 경비·청소 등 공동 용역비, 참가업체 안내책자 발간비 등 포함
- \* 전기, 전화, 압축공기, 급배수 등 각종 부대시설 사용료, 전시장 시간외 사용료 등 킨텍스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시설사용료는 참가업체가 부담
- o 주최자는 특별기획으로 별도의 전시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참가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.

## □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

- o 참가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의 50% 이상을 납부하여야 참가신청이 유효
  - ※ 잔금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완납
- o 참가신청서류는 수소모빌리티<sup>+</sup>쇼 홈페이지([www.h2mobility.kr](http://www.h2mobility.kr))를 통해서 신청
- o 참가비는 지정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
  - 신한은행 100-024-396374  
(예금주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)
  - \* 참가비는 원화로 납부하고, 은행송금 관련 수수료는 참가자 부담
  - \* 지정된 계좌에 입금 완료된 날을 참가신청 기준으로 함.
- o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(부가세 면제)에 따라 참가비 납부시 부가세 10%를 제외한 금액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
- o 신청마감일인 2020년 5월 31일 이후에 참가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가업체는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% 완납하여야 함.
- o 주최자가 기획한 특별전시전 및 전략적 유치활동에 따라 참가하는 업체의 참가신청과 참가비 납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적용(외국기관이 다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참가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)

# 2021수소모빌리티+쇼 참가신청서

## 참가업체

|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-|--|
| 회사명<br>(단체/협회/기관) | 국문   | 대표자 |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영문   |     |         |  |
| 주 소  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|  |
| 담당자               | 성 명  |     | 직 위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부 서  |     | 전 화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휴대전화 |     | 팩 스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| 이메일  |     | 회사 홈페이지 |  |
| 전시품목              |      |     |         |  |

## 전시면적 신청 및 참가비

### ■ 전시관

(부가세 별도)

| 구 분    | 참가비 단가         | 전시신청 면적 | 참가비 총액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독립식 부스 | 2,500,000원/부스  | 부스      |        |
| 조립식 부스 | 3,000,000원//부스 | 부스      |        |

주) 1부스 = 3m×3m

## 참고사항

■ 참가비 지정은행 계좌 : 신한은행 100-024-396374 (예금주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)

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참가비 납부시 부가세 10% 제외한 금액을 지정 은행계좌에 입금

■ 문 의(수소모빌리티조직위원회)

- 한국자동차산업협회 (전화: 02-3660-1894, 팩스: 02-3660-1901)
-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(전화: 02-6258-7447, 팩스: 02-6258-7451)
- 수소에너지네트워크(주) (전화: 02-6956-8995, 팩스: 02-6956-8996)
- 한국수소산업협회 (전화: 052-277-9812, 팩스: 052-277-9814)

2021수소모빌리티+쇼 참가업체 모집공고(수소모빌리티쇼+조직위원회 공고 제 2020-1호)와 참가관리 규정(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0-1호)을 준수하고, 양 규정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할 것을 서약하며,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|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|
| 회 사 명<br>(단체/협회/기관) |  | 대표자명 | (인)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|

# 위 임 장

## ■ 외국 참가업체(위임자)

|     |      |  |     |  |
|-----|------|--|-----|--|
| 회 사 |      |  |     |  |
| 주 소 |      |  |     |  |
| 담당자 | 성 명  |  | 직 위 |  |
|     | 부 서  |  | 이메일 |  |
|     | 휴대전화 |  | 전 화 |  |

당사는 2021수소모빌리티<sup>+</sup>쇼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 업체를 한국내 대리업체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며, 2021수소모빌리티<sup>+</sup>쇼 참가업체 모집공고(수소모빌리티쇼<sup>+</sup>조직위원회 공고 제2020-1호)와 참가관리 규정(수소모빌리티<sup>+</sup>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0-1호)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직위(대표자 또는 부서 책임자) :

성 명 : (인)

## ■ 한국 대리업체(수임자)

|     |      |     |     |
|-----|------|-----|-----|
| 회 사 |      | 대표자 |     |
| 주 소 |      |     |     |
| 담당자 | 성 명  |     | 직 위 |
|     | 부 서  |     | 이메일 |
|     | 휴대전화 |     | 전 화 |

## 2021수소모빌리티+쇼 참가관리 규정

### 제1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“모빌리티+쇼”라 함은 2021수소모빌리티+쇼를 말한다.
- ② “참가업체”라 함은 본 모빌리티+쇼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, 모빌리티+쇼 전시기간 동안 전시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업체(기관 및 단체 포함)를 말한다.
- ③ “주최자”라 함은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수소모빌리티쇼+조직위원회”를 말한다.

### 제2조 (참가신청)

- ① 참가신청서류는 수소모빌리티+쇼 홈페이지(www.h2mobility.kr)를 통해 신청한다.
- ② 주최자와 다수 기업의 모빌리티+쇼 참가 유치에 관한 공식협약을 체결한 협회 또는 기관(단체)에 소속된 회원사는 소속 협회나 기관(단체)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참가신청서 제출시 제3조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### 제3조 (참가비 납부조건)

- ①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참가신청금(참가비의 50%)을 참가신청시 납부하고 잔금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마감일인 2021년 5월 31일 이후에 참가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가업체는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% 완납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(전시위치와 면적 배정)

-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전시면적 규모 순, 동일 면적시 참가신청(참가비의 50% 납부) 일자순으로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주최자가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재조정할 수 있다.

- ② 주최자가 모빌리티+쇼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한 참가업체는 위치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업체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- ④ 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.

#### 제5조 (모빌리티+쇼의 취소 및 변경)

- ① 주최자가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모빌리티+쇼를 취소 또는 변경,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업체에 발생한 손실(참가비,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- 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빌리티+쇼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모빌리티+쇼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업체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
#### 제6조 (참가업체의 참가해지 · 취소 및 위약금)

-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본 참가업체 모집공고(수소모빌리티+쇼조직위원회 공고 제2020-1호) 및 참가관리 규정(수소모빌리티+쇼조직위원회 규정 제2020-1호)을 위반할 경우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가업체가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아래표에 따른 해약금을 차감하여 이자없이 환불한다.

| 해 지 시 기                  | 해 약 금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2021. 6. 1 - 2021. 7. 31 | 전체참가비의 50%  |
| 2021. 8. 1 - 2021. 9. 7  | 전체참가비의 100% |

- ② 참가업체가 2021년 5월 31일까지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참가업체가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하며, 주최자는 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없이 환불한다.

| 취 소 시 기                  | 위 약 금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2021. 6. 1 - 2021. 7. 31 | 기준액의 50%  |
| 2021. 8. 1 - 2021. 9. 7  | 기준액의 100% |

※ 기준액=(취소면적/배정면적)×전체참가비

※ 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.

- ④ 제3항의 취소시점은 참가업체의 사용취소 요청 공문서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
## 제7조 (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)

- ① 참가업체는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”과 주최자가 정한 “모빌리티+쇼 관리지침” 및 “모빌리티+쇼 전시지침”에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, 관리, 운영하여야 하며,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,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③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한 손상, 도난,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④ 참가업체는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.
- ⑤ 참가업체가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에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업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⑥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⑦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 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#### 제8조 (보험부보)

- ① 주최자는 전시기간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 사고에 대비해 대인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모빌리티+쇼 전 기간 동안 자사 부스에서 관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9조 (보충규정)

- ① 킨텍스 “전시장 운영요령”과 “모빌리티+쇼 관리지침” 및 “모빌리티+쇼 전시지침”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, 참가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**제10조 (분쟁해결)** 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,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